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3117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묘진

변론 종결2021. 11. 18.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10. 14. 접수 제24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68,788,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68,788,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10. 14. 접수 제24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06398 구상금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2. 6. 15. "C은 원고에게 96,519,025원과 그 중 95,530,395원에 대하여 2012. 3. 21. 부터 2012. 4. 1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7.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3.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C, E, F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은 2019. 5. 21.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5. 23. 접수 제13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C의 배우자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9. 10. 14. 접수 제483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그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C의 상속분인 2/9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인들이 고령인 피고 A의 노후 생활비를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후 피고 A이 C의 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피고 B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일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선의의 항변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은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오규희

별지